

#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1. .  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준비와 대회 지원을 위한 업무수요 급증에 따라, 평창군의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개편과 충원으로 올림픽 성공 개최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군(郡) 본청 행정기구 확대 설치 (안 제3조제1항)

- (종전) 12개 실·과·단 → (개정) 14개 실·과·단 확대

※ 1개 단 명칭변경 : (종전) 동계올림픽추진단 → (개정) 올림픽추진단

※ 2개과 신설 : 올림픽운영과, 올림픽시설과

나. 행정기구 확대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(안 제3조제2항 제12 및 제14호)

- 올림픽추진단 : (올림픽) 총괄기획·대회홍보·시민참여·자원봉사 업무

- 올림픽운영과 : (올림픽) 대회지원·숙박음식·문화올림픽 업무

- 올림픽시설과 : (올림픽) 시설총괄·도시정비·경관정비 업무

다. 한시기구인 올림픽운영과의 존속기한은 2017.12.31일까지 (부칙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붙임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6.1.15~22.) 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, 성별영향평가, 부패영향평가 등 : 해당없음 및 원안동의

##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기획감사실·문화관광과·주민생활지원과·종합민원과·자치행정과·재무과·경제체육과·환경위생과·산림과·안전건설과·도시주택과·동계올림픽추진단을”을 “기획감사실·문화관광과·주민생활지원과·종합민원과·자치행정과·재무과·경제체육과·환경위생과·산림과·안전건설과·도시주택과·올림픽추진단·올림픽운영과·올림픽시설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5호하목을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올림픽추진단

제3조제2항제12호가목 중 “추진계획 수립”을 “종합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나. 패럴림픽대회 지원
- 다. 올림픽 유산계획, 영향(OGI) 관련 업무
- 라. 동계올림픽 대회 홍보
- 마. 동계올림픽 시민참여, 대회 붐 조성
- 바. 올림픽 홍보시설물 설치, 대회 홍보물품 제작
- 사.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모집 및 운영
- 아.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업무

제3조제2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13. 올림픽운영과

- 가. 동계올림픽 대회운영 지원
- 나. 동계종목 국제대회 개최 지원
- 다. 국제대회 교통, 수송, 보안 지원에 관한 업무
- 라. 배뉴운영 및 관중경험 지원에 관한 업무
- 마. 동계종목 저변 확대
- 바. 동계올림픽 대비 숙박·음식 선진화
- 사. 동계올림픽 문화행사 및 공연 육성·지원
- 아. 문화창작올림픽특구사업 관련 업무

### 14. 올림픽시설과

- 가. 올림픽대회 관련 시설 조성 및 지원 업무
- 나. 올림픽 수송 인프라 지원
- 다. 경기장 사후 활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
- 라. 특구 지정 및 개발 조정·변경
- 마. 특구지역 공공부문 개발, 민자유치 업무
- 바. 게이트웨이지구, 주요 이동구간, 경기장 주변(관문)지역 도시 및 경관 정비 업무
- 사. 도심지역 경관(주택 등) 정비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 존속기한) 한시기구인 올림픽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6. 12.31일까지로 하고, 올림픽운영과의 존속기한은 2017.12.31일까지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실·과의 설치) ① 군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<u>기획감사실·문화관광과·주민생활지원과·종합민원과·자치행정과·재무과·경제체육과·환경위생과·산림과·안전건설과·도시주택과·동계올림픽추진단을 둔다.</u></p> <p>② 실·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자치행정과 가. ~ 파. (생략) <u>하.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업무</u></p> <p>6. ~ 11. (생략)</p> <p>12. <u>동계올림픽추진단</u> 가. 동계올림픽 <u>추진계획 수립 및 기획·조정</u> 나. 동계올림픽 <u>조직위원회 업무 협조 및 지원</u> 다. 동계올림픽 <u>관련 행사 및 대회 지원</u> 라. <u>대회경기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</u></p>	<p>제3조(실·과의 설치) ① ----- ----- <u>기획감사실·문화관광과·주민생활지원과·종합민원과·자치행정과·재무과·경제체육과·환경위생과·산림과·안전건설과·도시주택과·올림픽추진단·올림픽운영과·올림픽시설과를</u> --.</p> <p>②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가. ~ 파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6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<u>올림픽추진단</u> 가. ----- <u>종합운영</u> ----- - 나. <u>페럴림픽대회 지원</u>  다. <u>올림픽 유산계획, 영향(OGI) 관련 업무</u> 라. <u>동계올림픽 대회 홍보</u></p>

마. 올림픽특구 지정 및 개발 사업 지원

바. 올림픽연계 지역균형개발 사업 추진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마. 동계올림픽 시민참여, 대회  
분 조성

바. 올림픽 홍보시설물 설치, 대회  
홍보물품 제작

사.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모집  
및 운영

아.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업  
무

### 13. 올림픽운영과

가. 동계올림픽 대회운영 지원

나. 동계종목 국제대회 개최 지  
원

다. 국제대회 교통, 수송, 보안  
지원에 관한 업무

라. 메뉴운영 및 관중경험 지원  
에 관한 업무

마. 동계종목 저변 확대

바. 동계올림픽 대비 숙박·음식  
선진화

사. 동계올림픽 문화행사 및 공  
연 육성·지원

아. 문화창작올림픽특구사업 관  
련 업무

### 14. 올림픽시설과

가. 올림픽대회 관련 시설 조성  
및 지원 업무

나. 올림픽 수송 인프라 지원

다. 경기장 사후 활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

라. 특구 지정 및 개발 조정·변경

마. 특구지역 공공부문 개발, 민자유치 업무

바. 게이트웨이지구, 주요 이동구간, 경기장 주변(관문)지역 도시 및 경관 정비 업무

사. 도심지역 경관(주택 등) 정비

# 비 용 추 계 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가. 비용발생 요인 : 공무원 정원 증가(633명 → 642명) 증9명
- 나. 관련조문 :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 제1항(실·과의 설치)

## 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 9명이 증원되고, 공무원 보수는 매년 전년대비 2.8% 상승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
- 2016년 비용추계 판단기준은 2015년 기준인건비 중 일반직 1인당 평균 인건비(58,162천원)에 2.8% 인상을 적용

나. 추계 결과 : 2016~2020년까지 총 지출 예상

- 2016년 : 59,791천원 × 9명 = 538,119천원
- 2017년 : 538,119천원 × 102.8% = 553,186천원
- 2018년 : 553,186천원 × 102.8% = 568,675천원
- 2019년 : 568,675천원 × 102.8% = 584,598천원
- 2020년 : 584,598천원 × 102.8% = 600,967천원

다. 재원조달 방안 : 자체재원 및 지방교부세 재원

## 3. 관련 의견

가.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장 남 동 선
연락처	(033) 330 -2210

# 관계법령 발취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(생략)

## 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②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③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④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제13조 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(이하생략)

②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(생략)

④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**제21조(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채정 협의)**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(장과 보조·보좌기관을 포함한다)의 직급이 시·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, 시·군·구에서는 5급 이상(제13조 제1항에 따라 실·국을 둘 수 있는 시·군·구는 4급 이상을 말한다) 인 경우에는 미리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와 협의하여야 한다.